

-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- 『충북행복결혼공제』 참여 기업(근로자) 모집 연장

충청북도 및 영동군에서는 중소기업 미혼근로자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위해 ‘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기업(근로자)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5월 14일

영동군수

1. 사업안내

□ 추진배경

- 최근 경제적 이유로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
- 대기업·공기업 선호현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근로자 장기근로 유도

□ 사업개요

- (지원기간) 5년
- (지원인원) 영동군 12명 ※ 기업당 1명
- (지원대상)
 - (기업)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
 - *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,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
 - 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상 중소기업
 - (근로자)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미혼근로자
 - * 미혼근로자 중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사업주가 추천한 자
 - **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,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
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, 영동군,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(원금+이자) 지급

○ (공제설계)

구 분	내 용
월적립액	▶ 월 80만원(도·시군 30, 기업 20, 근로자 30) · 결혼 35만원(도·시군 20, 근로자 15) · 근속 45만원(도·시군 10, 기업 20, 근로자 15)
만기금액 (원금)	▶ 결혼+근속 48백만원(도·시군 18, 기업 12, 근로자 18) · 미혼+근속 36백만원(도·시군 6, 기업 12, 근로자 18) · 결혼안할시 미지급 12백만원(도·시군 12)

☞ **세제혜택** : (법인기업) **절세율 35%~47%** ⇒ **기업실부담 월 59천원~95천원**
(근로자)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**소득세 최대 50% 감면**

*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

▶ **참여제한**

- 제조업종 외 기타업종, 대기업 및 종사자수 5인 미만 업체
- 휴·폐업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(공고일 기준)
- 5년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기업 대표 및 배우자 직계비속, 형제·자매 관계에 있는 자
-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

2. 신청안내

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18. 5. 15. ~ 6. 15. 18:00까지
- (신청주체) 기업(근로자) 공제 가입신청서 제출
- (접수방법)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접수
- (신청서류)

1. 가입신청서 1부	6. 국세(지방세)납세증명서(기업) 1부
2. 주민등록등본(근로자) 1부	7. 재직증명서(근로자) 1부
3. 혼인관계증명서(근로자) 1부	8. 연결계좌 통장사본(근로자) 1부
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9.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
5. 중소기업(중견)기업 확인서 1부	10. 개인정보동의서(근로자) 1부

- (신청서식 및 세부사항) 영동군 홈페이지 사업안내(공고) 참조 ※ 서식활용

문의처 : 영동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Tel 043-740-3042